## 동부델타-ACE 1 단위주식혼합증권투자신탁 제 5-3 호 약관 변경 대비표

현 행 변 경

제 9 조(추가신탁)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,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.

제 11 조(신탁계약기간) <u>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</u>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년간으로 한다. 단, 신탁계약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

## **제40조(투자신탁보수)**①~②(생략)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7.625</u>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7.900</u>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0.300</u>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<u>0.175</u> 제 9 조(추가신탁) <u>자산운용회사는 제 8 조의 규정에</u>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,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.

제 11 조(신탁계약기간) <u>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</u> <u>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</u> 지로 한다.

제40조(투자신탁보수)①~②(종전과 동일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1.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0.1</u>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0.1</u> 3.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0.1</u>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<u>0.1</u>